

2024년도 제10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도 제10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주요 변경(강조)사항

- 가. 시행지역 확대: 제주 추가(기존 6개 지역 → 7개 지역)
나. 중도 퇴실 가능
다. 제1차 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기간: 2024. 04. 24.(수) 09:00 ~ 05. 03.(금) 17:00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원서접수 [5일간]	빈자리 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24. 04. 29.(월) 09:00 ~ '24. 05. 03.(금) 18:00	'24. 05. 30.(목) 09:00 ~ '24. 05. 31.(금) 18:00	서울, 부산, 대구, 광주,	06. 08.(토)	07. 10.(수)
제2차 시험	'24. 07. 22.(월) 09:00 ~ '24. 07. 26.(금) 18:00	'24. 08. 22.(목) 09:00 ~ '24. 08. 23.(금) 18:00	대전, 인천, 제주	08. 31.(토)	11. 13.(수)

- ※ 빈자리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
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
※ 접수마감일 13시 ~ 18시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제1차 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기간: 2024. 04. 24.(수) 09:00 ~ 05. 03.(금) 17:00
(자세한 사항은 “7. 시험의 일부 면제서류 제출 안내” 참조)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2)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① 「상법」 보험편 ②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함) ③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객관식 (4지 택일형)
제2차 시험	①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②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주관식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 답안 작성 기준

- 제1차 시험의 답안은 시험시행일에 시행되고 있는 관련 법령 등을 기준으로 작성
- 제2차 시험의 답안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등재*하는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를 기준으로 작성

*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자료실-손해평가사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나. 시험시간

구 분	시 험 과 목	문항 수	입실	시험시간
제1차 시험	① 「상법」 보험편 ②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함) ③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	09:00	09:30~11:00 (90분)
제2차 시험	①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②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과목별 10문항	09:00	09:30~11:30 (120분)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

- 해당 없음

5. 합격자 결정(「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6. 시험의 일부면제(「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가. 전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24년도 제10회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면제(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

나.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래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 ※ (참고) 면제 가능여부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보험-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등록여부 조회-손해사정업 보험계리업’에서 상호명 또는 등록번호로 조회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7. 시험의 일부 면제서류 제출 안내

가. 서류 제출 대상자: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나. 경력 산정 기준일: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전일[2024. 04. 28.(일)] 까지

다. 제출기간: 2024. 04. 24.(수) 09:00 ~ 05. 03.(금) **17:00**

라. 서류제출 및 심사기관(7개 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02-2137-0566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051-330-1815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053-580-2384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61008	062-970-1768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35000	042-580-9140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21634	032-820-8697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제주 제주시 북지로 19	63220	064-729-0713

※ 울산 본부에서는 시험면제 서류접수 및 심사를 하지 않음

마. 서류제출 안내

○ 제출방법

- 위 서류제출 및 심사기관(7개 기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단,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2024. 05. 03.(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대상자별 제출서류

- 손해사정사 자격에 의한 면제자

-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신청서(「재보험사업 및 농업 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4호] 서식)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양식) 1부
- ③ 손해사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손해평가인 경력에 의한 면제자

-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신청서(「재보험사업 및 농업 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4호] 서식)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양식) 1부
- ③ 손해평가인 위촉기간 확인서(농협손해보험(주)이 확인한 원본) 1부

- 손해사정 관련 업무 경력에 의한 면제자

-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신청서(「재보험사업 및 농업 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4호] 서식)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양식) 1부
- ③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1부(아래 중 택1)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전체이력)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 ④ 경력증명서(공단 양식) 1부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수험자 동의 시 공단에서 직접 전산조회)으로 대체 가능

※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제출 불가 시 ①경력증명서 본인이 작성 + ②동일 직종 종사자의 사실확인서 + ③사업자 등록증사본(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제출서식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loss>)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자료실-서식자료실)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회사별 각각 발급
 - 경력기간 계산 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자의 날인 또는 직인 등이 있는 원본을 제출
 - ※ 팩스, 사본 등의 경우 인정 불가
 - 면제서류 승인여부는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 내 반드시 **제1차 시험 면제자 유형**으로 원서접수 하여야 함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2024. 04. 29.(월) 09:00 ~ 05. 03.(금) 18:00 [5일간]
- 제2차 시험: 2024. 07. 22.(월) 09:00 ~ 07. 26.(금) 18:00 [5일간]
-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loss>)에서 접수
 -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 원서접수 시 등록된 사진으로 자격증 발급
- 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다.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20,000원
- 제2차 시험: 33,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전자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는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응시수수료 환불(「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 시험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며, 수험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 지참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 사항 등 포함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수험표는 분실 시 시험 당일까지 재 출력 가능

바.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사. 시험 시행기관

- 1, 2차 시험: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본부, 인천, 제주지사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지역 및 시험장 직접 선택
- ※ 기관별 주소 및 연락처는 “7. 시험의 일부면제서류 제출안내” 참조

아.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6페이지 기관목록 참고)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임신사실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

장애 유형		편의 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 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해당 없음	
		답안작성 방법	- 확대 답안지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뇌병변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지체 장애	(1) 상지 중증 (장애정도가 심 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2) 상지 경증 (장애정도가 심 하지 않은 장애 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해당 없음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해당 없음	
	(3) 하지 (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 단, 시험 중 이동이 있거나 서서 작업하 는 종목에 한정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해당 없음	

	(4)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1) 또는 (2)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3)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 작성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해당 없음	
청각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①,②,③호 중 하나
신장·신장장투요루 장애	장애 정도 구분 없음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①,②,③호 중 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 사항 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임신부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④,⑤호 중 하나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부.
-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9.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2024. 06. 08.(토) ~ 06. 14.(금) [7일간]

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방법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loss>)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 정답 발표로 같음

10. 제2차 시험 의견제시

가. 의견제시 기간: 2024. 08. 31.(토) ~ 09. 06.(금) [7일간]

나. 의견제시 방법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loss>)를 통해 의견제시

※ 제2차 시험은 가답안 등을 공개하지 않음,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만 가능

11.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구 분	발 표 일 시	발 표 방 법
제1차 시험	2024. 07. 10.(수) 09:00	•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 60일간 (http://www.Q-Net.or.kr/site/loss) • ARS (☎1666-0100, 유료): 4일간
제2차 시험	2024. 11. 13.(수) 09:00	

나. 자격증 발급

- 발급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주 소: (07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2층
- 연락처: ☎ 02-3771-6816

12. 수험자 유의사항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앱을 통한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 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사진(컬러)·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1/2 경과 전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 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1/2 경과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일부교시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으로 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 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지워지는 사인펜은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4.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장애인 등)는 한국산업 인력공단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loss>) 공지사항에 게시된 “국가전문자격시험 유형별 응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15. 접수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 추가(빈자리) 원서 접수는 선착순 접수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16.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손해평가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loss>) 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 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형별 기재란에 표시된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 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 한가지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고 수정테이프는 사용 가능하나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별지 2】

손해평가인 위촉기간 확인서			
주 소		발급처	
성 명		생년월일
위 촉 기 간		담 당 업 무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p>(주) 1. 실제 위촉기간만을 시기와 종기를 구분하여 연월일까지 기재할 것. 2. 담당업무란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p>			
<p>상기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1항 및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p>			
202 년 월 일			
농협손해보험(주) 대표이사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4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0 auto;"></div> 직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경력증명서 작성방법

- ① **성명:** 한글로 작성하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③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④ **주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작성하되 통·반까지 쓰시기 바랍니다.
- ⑤ **재직기간:** 기간을 연·월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⑥ **소속 및 직위:** 소속은 해당 기관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 ⑦ **담당 업무 내용:** 담당 업무는 실무경력을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별지 4】

*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의 부도·폐업등으로 경력증명서에 사업주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 작성

사 실 확 인 서

<수험자>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전화번호 :

근무직장명	직 위	재 직 기 간	담 당 업 무	비 고

본 사실 확인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항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에 필요 경력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 위조·변조 등)도 감수하겠다는 명심하고 위와 같이 입증합니다.

<입증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무처 : 직위 :

근무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응시자와의 관계 :

첨 부 : 입증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정 불가함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